

빅데이터 페어 201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자료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

2013년 12월 18일(수) 13:00~15:00
코엑스 3층 E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1. “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이용내역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거래기록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 조합·분석·처리시스템”이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생성된 개인정보”란 정보 조합·분석·처리시스템 운용을

통해 생성된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6. “재식별화”란 비식별화된 정보를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재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의 목적
3.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4조(이용내역정보의 수집)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수집, 조합, 분석 또는 처리되는 사실 및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검색프로그램 등에서 이용자 또는 검색프로그램등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거부 선택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조합·분석·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가 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생성된다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분석·처리) ①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이하 “공개된 개인정보등” 이라 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는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과정에서 재식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식별화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는 조합, 분석 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저장·관리) ①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저장·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의 설치·운영
2.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② 이용내역정보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할 수 없다.

제8조(민감정보 생성의 금지) 특정한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조합, 분석 또는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통신 내용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송중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제3자 제공)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공받는 자
2.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항목
4.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공개된 개인정보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